

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」 시행 공고(2차, 확인지급)

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」 지원계획(2차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6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확인지급 대상 · 방법

□ **(지원 대상)**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(붙임 참조)을 충족하면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① 신청사이트(버팀목자금플러스.kr)에서 ‘지급대상자’로 조회되지만,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, 타인계좌 수령희망,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

- *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(타인명의 핸드폰,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)
-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(대표자 입원, 해외체류 등)
-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
- 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

② ‘지급대상자’로 조회되지만, 추가자료 제출·확인·검증이 필요한 경우

- *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
-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협
- ③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(‘21년 1차 추경)을 받은 사업체

③ ‘지급대상자’로 조회되지 않지만,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

- * ①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
- ② 일반업종(경영위기업종 등)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
- ③ ‘21.3.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
- ④ ‘19.11월~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(또는 매출액0)인 사업체

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, 신청유형(지급금액)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(다수사업체 포함)

- * ①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(지급금액) 변경 희망 사업체
- ② 일반업종(경영위기업종 등)으로 신청유형(지급금액) 변경 희망 사업체

【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】

※ 필수서류 : 1)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2)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

구분	대상 유형	제출서류	방법	
버팀목 자금 플러스	① '지급대상자'로 조회되지 않,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, 타인계좌 수령희망,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	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*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미보유자, 미성년자, 이름·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	1)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: 주민등록초본 2) 미성년자인 경우 : 통합위임장	예약후 방문
		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* 입원, 해외체류 등 *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	(필수)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1) 가족 :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(최근 1개월 이내) 2) 타인 :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	
		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(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)	(필수)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	
		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*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	(필수) 대리인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1) 가족 :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(최근 1개월 이내) 2) 타인 :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	
미신청 사업체	② '지급대상자'로 조회되지 않, 추가자료 제출·확인·검증이 필요한 경우	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	(필수) 통합위임장	온라인
		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협 *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	(필수) 인증서, 설립인가증 등 * 사회적기업인증서, 협동조합·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, 사회적협동조합·연합회·이중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, 소비자생활협동조합·연합회·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	
		③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(21년 1차 추경)을 받은 사업체	(필수)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(고용노동부 발급)	
버팀목 자금 플러스	③ '지급대상자'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	①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	(필수)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(관할 지자체 발급)	온라인
		② 일반업종(경영위기업종 등)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	(필수)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(세무서 발급)	
		③ '21.3.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사업체'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(동일 대표자,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) *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사업자를 재등록한 경우에 한함	(필수) 폐업사실증명원 (세무서 발급)	
		④ '19.11월~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(또는 매출액0)인 사업체	-	
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지급 사업체	④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, 신청 유형(지급금액) 변경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	①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(지급금액) 변경 희망 사업체	(필수)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(관할 지자체 발급)	온라인
		② 일반업종(경영위기업종 등)으로 신청유형(지급금액) 변경 희망 사업체	(필수)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(세무서 발급)	

2. 확인지급 절차 · 신청방법

- **(개요)**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·접수 후 기본정보·증빙자료 구비 여부(소진공), 소기업 해당 여부(국세청 등)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, 지급
- **(지원 절차)**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(이하 “소진공”) 확인·검증을 거친 후 지급
 - *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,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

【확인지급 처리절차】

① 신청·접수	② 증빙서류 검증	③ 지원여부 확인 및 지급	④ 이의 처리
온라인 (또는 예약후 방문)	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	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, 계좌이체	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, 재심의 후 결과 통보
소기업·소상공인	소진공	소진공	소진공

□ 온라인 신청 (4. 26. ~ 5. 14.)

신청대상	<p>① 신청사이트(버팀목자금플러스.kr)에서 '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, 타인계좌 수령희망,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</p> <p>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</p> <p>② '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, 추가자료 제출·확인·검증이 필요한 경우</p> <p>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</p> <p>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협</p> <p>③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(21년 1차 추경)을 받은 사업체</p> <p>③ '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</p> <p>①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</p> <p>② 일반업종(경영위기업종 등)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</p> <p>③ '21.3.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</p> <p>④ '19.11월~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(또는 매출액0)인 사업체</p> <p>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, 신청유형(지급금액)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(다수사업체 포함)</p> <p>①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(지급금액) 변경희망 사업체</p> <p>② 일반업종(경영위기업종 등)으로 신청유형(지급금액) 변경희망 사업체</p>
------	---

- ① (신청) 온라인 사이트(버팀목자금플러스.kr) 접속,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
 - *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(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)
- ② (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)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 - * '신속지급'과 '확인지급'으로 자동분류

③ (본인인증)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(개인, 법인)

④ (신청정보 입력)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(해당자) 업로드

⑤ (요건 확인)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

*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,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

-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

*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

⑥ (지급)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

□ **예약후 방문신청(5. 7. ~ 5. 14.)** (예약은 5.6(목) 오전 9시부터 가능)

신청대상	<p>① 신청사이트(버팀목자금플러스.kr)에서 '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,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
-------------	--

① (예약) “버팀목자금플러스.kr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(☎1811-7500)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·시각·장소 예약

*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

*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:00 ~ 18:00

* 방문장소 :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(지자체가 아님에 유의)

※ [주의]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
(중기부, 지자체, 소진공 본사·지역본부·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음)

② (방문·신청) 사전에 예약한 일자·시각에 예약장소(해당 소진공 지역센터)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

③ (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)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

④ (요건 확인)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·확인

*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,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

⑤ (지급)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

4. 이의처리

- (일정) '21.5월 중 별도안내 예정
- (대상) 확인지급 '부지급 통보'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
- (방법)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*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

*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(신용카드결제액, 현금영수증발행액,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)만 인정하고,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

5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(파일)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, 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일체 반납하지 않음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, 중복수급·부정수급·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
-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'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*과 중복 지원 불가

* 특수형태근로종사자/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방문·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,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, 농·어·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

6. 신청 문의

- 전화 문의 :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(☎1811-7500(평일 09~18시))
-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버팀목자금플러스.kr)-온라인 채팅상담(평일 09~20시)

붙임

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금액

□ 개요

-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

□ 지원대상 및 금액

① (기본요건)

- (사업체)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
- (매출액) 매출액이 소기업* 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는 사업체
 - * '20년 기준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: 10억원, 도소매: 50, 제조: 120 등)
 - *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
-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
- (개업일)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'21. 02. 28. 이전
- (영업중)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 - *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

【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】

개업 시기 ^①	매출액 규모	매출액 감소	
		기준	비교
~'19년말	'19년 또는 '20년 신고매출액	'19년 신고매출액	'20년 신고매출액
'20.1~11월	'20년 신고매출액 또는 '20.9월 ^② ~ '21.1월 월평균 매출액	'20.9월 ^② ~ 11월 월평균 매출액	'20.12월 ~ '21.1월 월평균 매출액
'20.12월~'21.2월	개업월 ~ '21.3월 월평균 매출액 ^③	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	

①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(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) 환산하여 적용
(예 :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→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)

② '20.9월~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

③ 신용·체크카드 결제액, 현금영수증 발급액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

※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

② (지원유형 및 지원금액)

【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】

구 분	①집합금지		② 영업 제한	③일반업종			
	①-1지속	①-2완화		③-1 경영위기 (매출 20%이상 감소 업종)			③-2 매출감소
기준	6주 이상	6주 미만	영업제한	60% 이상	40% 이상 60%~미만	20% 이상 40%~미만	-
매출액 요건	소기업	소기업	소기업& 매출감소	소기업& 매출감소			매출 10억원 이하 & 매출감소
지원금액	500만원	400만원	300만원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	100만원

① (집합금지) 중대본·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*된 사업체

*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대본·지자체가 '20.11.24.~'21.2.14.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

① (지속) '20.11.24 ~ '21.2.14,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**500만원**

② (완화) '20.11.24 ~ '21.2.14,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**400만원**

【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(시설)】

구 분	수도권	비수도권
집합금지 (지속)	유형업소(5종), 홀덤펍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스탠딩공연장	유형업소(5종), 홀덤펍
집합금지 (완화)	실외겨울스포츠시설, 파티룸, 학원·교습소,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	실외겨울스포츠시설, 파티룸

*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,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
** 유형업소(5종):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

② (영업제한) 중대본·지자체의 방역조치*로 영업제한된 사업체 중 '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**300만원**

*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대본·지자체가 20.11.24.~ '21.2.14.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

-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

* 예) ① 21시 ~ 05시까지 영업금지, ② 호텔 객실 50% 미만 영업

< 영업제한 적용 업종(시설) 예시 >

구 분	수도권	비수도권
영업제한	식당·카페, 숙박업 이·미용업, PC방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·멀티방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목욕장업, 영화관, 종합소매업(300m ² 이상)	식당·카페, 숙박업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·교습소,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

*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,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
③ **(일반업종)** 중대본·지자체의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, 사업체 중 '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

200만원
250만원
300만원

① (경영위기) 매출 감소 20%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

-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'19년 대비 '20년에 20% 이상 감소한 "10개 분야 112개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"
-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
 - ¹⁾매출감소율 20~40%: 200만원, ²⁾40~60%: 250만원, ³⁾60% 이상 300만원

② (매출감소) '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(연매출 10억원 이하) **100만원**

□ **지원 제외대상**

- 사행성 업종, 변호사·회계사·병원·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·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
 - * 단, 유흥주점, 콜라텍은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
-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
- '21.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*을 지원받은 경우
 - *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, 방문·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
- 비영리기업·단체·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 - 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
- 국세청에 휴·폐업 신고를 했거나,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*할 수 있는 경우
 - * '19년 연매출액 '0원', '20년 연매출액 '0원'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
-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